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6.] [규칙 제2158호, 2020. 11. 6.,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1.06)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나. 〈삭제 2017.04.14〉